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06 회 임 시 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4. 7.

박 종 길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박종길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규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서 달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 안 제17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18조 및 제19조에는 회장의 직무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20조에는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4년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4071
----------	----------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 박종길, 손범구, 장호섭,
김정희, 이진환, 정창근,
도하석

1.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규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서 달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구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4.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구민실천사업 추진
5.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1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달서구의

회 의원, 기업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8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5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1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속가능발전 구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u> 2. <u>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u> 3. <u>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u> 4. <u>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구민실천사업 추진</u> 5. <u>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u> 6. <u>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u>
<p><u><신 설></u></p>	<p>제1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p>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하고, 달서구의회 의원, 기업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신 설>

제18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9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
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

<신 설>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
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관계 법령 】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